

『필리핀, 재활용 라벨 제정 및 표시기준 도입 법률안 [하원 법안 제9281호, 2026]』

2026. 07. 16.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제품
통보국	필리핀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1,615,831 (2025)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동 법률안은 필리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의무화하고,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재생원료 함량 및 라벨 크기·위치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적용범위) 필리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음료·생활용품·개인위생용품·전자제품 등 모든 소비재의 1차 및 2차 포장

□ 주요 내용

- (재활용 라벨 표시 및 적용범위)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수입 소비재의 모든 1차·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고,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을 영어로 기재하도록 함
- (라벨 규격 및 세부기준 마련) 라벨은 포장 표면적의 2 % 이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연포장에는 인쇄·슬리브·밴드·스티커 방식을 허용하며, 구체적인 라벨 도안과 운영기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마련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인증 정보) 동 법률안은 별도의 제품 인증·등록 또는 사전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규제는 아니며,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필수 정보와 규격을 갖춘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미국) 미국은 소비재 1·2차 포장재에 대한 전국 공통의 의무 재활용 라벨 제도는 없으나, 실제 재활용 체계가 갖춰진 경우에만 재활용 가능 표시를 허용하고, 재활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도록 관리함
- (일본) 일본은 유리병·페트병·종이·플라스틱 용기포장에 대해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제조·수입·판매사업자의 사용량에 따른 재생품화 의무를 규정하여 관리함

- (EU) EU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에 공통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 설계,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표시 및 생산자책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동 법률안은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여 포장정보 확인과 디자인·스티커 수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표시·검증 및 제재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의 사전 대응 판단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권고사항) 기업은 필리핀 수출제품의 포장재 정보와 라벨 추가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시행규칙의 제재·책임 기준을 확인하여 현지 수입자와 비용·책임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필리핀 수출기업은 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을 확인하고 기존 포장에 라벨을 추가하거나 별도 포장을 운영해야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확정 전까지 포장 변경시점과 현지 수입자와의 책임 분담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중소기업) 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을 우선 확인하고, 스티커 부착 등 최소한의 방식으로 라벨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포장 변경 비용은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해 줄일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필리핀 수출제품의 포장재 정보와 라벨 문구·표시 방식을 품목별로 표준화하고,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와 포장재 공급업체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협력업체,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업체 및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보하고, 계열사·브랜드 공통의 라벨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의 표시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인증 정보	6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8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8
2.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11
V.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2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2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5
VI. 대응 방안	16
참고 1 참고자료	17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8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An Act Creating the Philippine Recycling Label, Providing Its Specifications and Coverage, Prescribing Penaltie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House Bill No. 9281, 2026		
	국문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제정하고, 그 규격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며, 벌칙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하원 법안 제9281호, 2026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필리핀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제정 초안
시행(예정)일	관보 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후		통보일(고시일)	2026. 05. 18.
HS Code	전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709,033,000 천불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11,615,831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필리핀 하원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규제 목적	소비재 포장의 재활용 정보 표준화 및 자원순환 촉진		
	주요 내용	국내 제조·수입 소비재의 모든 1차·2차 포장에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을 포함한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고, 라벨 크기·위치·표시방식을 규정하며 세부 도안과 운영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도록 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필리핀 재활용 라벨 의무화로 포장 변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과 제재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기업의 규제 대응에 불확실성이 예상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필리핀 수출기업은 재활용 라벨 적용에 따른 포장 수정과 정보 관리 부담이 발생하며, 세부 시행·제재기준 미확정으로 대응시점 판단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대응 방안	기업은 필리핀 수출제품의 포장재 정보와 라벨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향후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현지 수입자와 역할 및 책임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도입배경

- 필리핀 하원은 소비재 포장에 재활용 가능 여부, 재질,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필리핀 재활용 라벨링법」을 마련함
- 필리핀은 「2000년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 9003)」을 통해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배출단계에서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효율 측면에서 제도 이행상의 미비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법(Republic Act No. 11898)」을 통해 생산자에게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 관리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질과 재활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적절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기존 제도는 폐기물 관리와 생산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재 포장에 재활용 가능 여부, 재질 구성,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을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통일된 라벨링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시설의 회수·선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필리핀 하원은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을 포함한 소비재의 1차 및 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재생원료 함량, 표시 언어 및 라벨 크기·위치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본 제정안을 발의함

□ 규제 요지

- 동 법률안은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 포장에 표준화된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적정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필리핀 재활용 라벨링법」 제정안임
- (재활용 라벨 표시 의무)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며, 식품, 음료, 생활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전자제품 등의 1차·2차 포장에 적용함
- (포장재 재질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표시)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고,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전국 재활용 가능, 전용시설에서 재활용 가능 또는 재활용 불가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표시) 포장재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또는 잔재폐기물 처리 등 적정 폐기방법을 표시하고, 재생원료가 사용된 경우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함
- (라벨 규격 및 표시방법) 재활용 라벨은 포장 표면적의 2 %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cm² 이상이 되도록 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대비로 표시하며, 연포장에는 인쇄, 슬리브, 밴드 또는 접착식 라벨 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 필리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음료·생활용품·개인위생용품·전자제품 등 모든 소비재의 1차 및 2차 포장재

□ 시행일

- 관보 또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후 시행

□ 적용제품

- 필리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음료·생활용품·개인위생용품·전자제품 등 모든 소비재의 1차 및 2차 포장재

□ 세부내용

- (재활용 라벨 표시 의무 및 적용범위) 동 법률안은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 포장에 표준화된 필리핀 재활용 라벨(Philippine Recycling Label, PRL)을 표시하도록 함
 - 적용대상은 식품, 음료, 생활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소비재의 모든 1차·2차 포장임
- (재활용 라벨 필수 표시정보) 필리핀 재활용 라벨에는 포장재의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적정 폐기방법, 재생원료 함량 등의 정보를 영어로 표시해야 함
 - (포장재 재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종이, 알루미늄 및 유리 등 포장재의 구성 재질을 명시해야 함
 - (재활용 가능 여부) 포장재의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필리핀에서 재활용 가능(Recyclable in PH)” 또는 “필리핀에서 재활용 불가(Not Recyclable in PH)” 로 표시해야 함
 - 재활용 가능 범위는 전국 재활용 가능, 전용시설에서 재활용 가능 또는 필리핀에서 재활용 불가로 구분함
 - (폐기방법)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잔재폐기물로 배출” 등 적정 폐기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함
 - (재생원료 함량) 포장재에 재생원료가 사용된 경우 “재생 플라스틱 30 % 사용” 과 같이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 (라벨 크기 및 표시방법) 필리핀 재활용 라벨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와 가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라벨은 포장 전체 표면적의 2 %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포장 표면적 100 cm² 당 2 cm²보다 작아서는 안 됨
 - 라벨은 포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대비로 인쇄해야 하며, 장식 요소, 봉인 또는 다른 표시로 가려져서는 안 됨
 - 연포장에는 직접 인쇄, 슬리브, 밴드 또는 접착력이 높은 스티커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재활용 가능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라벨에 포함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마련)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환경천연자원부 및 국가고형 폐기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야 함

※ 본 규정의 절차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 정보 항목은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대신하여 기술함

□ 개요

- 동 법률안은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PRL)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증, 등록, 사전승인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는 두고 있지 않음
- 재활용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는 정보, 라벨의 크기·위치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라벨 도안 및 세부 운영 기준은 법 시행 후 마련되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 재활용 라벨 표시

-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는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규정함
- (표시사항)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적정 폐기 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재활용 가능 여부) “Recyclable in PH“ 또는 “Not Recyclable in PH“를 표시하고, 전국 재활용 가능, 전용시설에서 재활용 가능 또는 필리핀 내 재활용 불가 여부를 구분하도록 규정함
- (표시언어) 모든 필수 표시정보는 영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라벨 규격 및 표시방법

- 재활용 라벨은 포장 표면적의 2 %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포장 표면적 100 cm² 당 최소 2 cm²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 라벨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고대비로 표시하고 장식 요소, 봉인 또는 다른 표시로 가려지지 않도록 규정함

- 연포장은 직접 인쇄, 슬리브, 밴드 또는 접착력이 높은 스티커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활용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QR 코드의 포함을 허용함

□ 시행규칙 마련

-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환경천연자원부 및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라벨 운영기준 및 세부 시행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법률안에는 세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미국은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재에 적용되는 전국 공통의 의무 재활용 라벨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표시지침(Federal Trade Commission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FTC Green Guides)¹⁾에 따라 실제 수거·선별·재활용이 가능한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가능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의 이용 가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주별로는 별도의 표시 및 생산자책임 규제가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는 포장재의 실제 재활용 가능성에 근거하여 재활용 표시를 제한하고 포장재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확대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도입동향)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오염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책임법(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SB 54)²⁾의 시행규정을 2026년 5월 확정하여 일회용 포장재와 플라스틱 식품서비스용품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조직 가입, 포장재 감량, 재활용률 관리 및 2032년까지 재활용·퇴비화 가능 구조로 전환하는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캘리포니아주는 음료용기 재활용 프로그램(Beverage Container Recycling Program, BCRP)을 통해 알루미늄·유리·플라스틱 등의 음료용기에 캘리포니아 환급가치(California Redemption Value, CRV)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³⁾

1)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chapter-I/subchapter-B/part-260/section-260.12>

2) <https://calrecycle.ca.gov/packaging/packaging-epr/>

3) <https://calrecycle.ca.gov/bevcontainer/>

2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용기포장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법⁴⁾에 따라 유리병·페트병·종이·플라스틱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지자체는 분리수거하며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상품화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페트병과 플라스틱·종이 용기포장 등에 재질별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포장의 구성재질과 분리배출 대상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 **(도입동향)** 최근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⁶⁾에 따라 포장재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판매·수거·재활용 전 과정에 자원순환 원칙을 적용하고, 감량·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설계와 사업자의 자율회수 및 재자원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일본은 음료용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 대상으로 관리하고 재질 식별표시를 의무화하며, 소비자가 뚜껑과 라벨을 분리한 후 지자체 수거체계에 배출하고 관련 사업자가 재상품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3

EU

- **(현행 규정)**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⁷⁾에 따라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에 공통 규정을 적용하며, 포장재의 설계,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성, 표시 및 생산자책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4) <https://laws.e-gov.go.jp/law/407AC0000000112>

5) <https://laws.e-gov.go.jp/law/403AC0000000048>

6) https://www.meti.go.jp/policy/recycle/main/admin_info/law/02/index.html

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770406839293&uri=CELEX%3A32025R0040>

- **(도입동향)** EU는 PPWR에 따라 2028년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성을 소비자가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공통 표시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 등급제와 재생원료 함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포장재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EU는 일회용 플라스틱병 및 금속 음료 용기를 대상으로 회원국이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 DRS)를 도입하여 2029년까지 연간 90 % 이상의 분리수거율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표시체계와 회수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있음
- 최근 EU는 음료용기를 포함한 포장재 전반에 대해 재사용 확대, 재생원료 사용 의무, 공통 분리배출 표시 및 설계단계의 재활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packaging/>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필리핀	미국	일본	EU
상위 법·프레임(전반)	필리핀 재활용 라벨링 법안,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RA 9003), 생산자책임재활용법(RA 11898)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마케팅표시 지침(FTC Green Guides), 주별 포장재 생산자책임법	용기포장재활용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관 기관	통상산업부(DTI), 환경천연자원부(DENR),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 (NSWMC)	연방거래위원회(FTC), 주별 환경·재활용 담당기관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 지방자치단체	유럽위원회(EC), 회원국 환경당국 및 시장감시기관
규제 대상	필리핀에서 제조·수입되는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재	재활용 가능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포장 및 주별 생산자책임 적용 포장재	페트병, 플라스틱·종이 용기포장 등 지정 용기·포장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책임 주체	제조자·수입자 등으로 예상되나 법안상 구체적 책임주체는 불명확함	제조자, 브랜드 소유자, 수입자 및 판매자	용기·포장 제조자, 제품 제조· 수입·판매사업자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운영자
표시·라벨 의무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 방법, 재생원료 함량을 영어로 표시함	재활용 가능 표시 사용 시 실제 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접근 범위를 입증함	지정 용기·포장에 재질별 식별 마크를 표시함	재질 및 분리배출 정보를 나타내는 공통 라벨을 단계적으로 적용함
표시 기준	포장 표면적의 2 % 이상, 고대비·가시성 확보가 요구됨	재활용시설 이용 가능 범위가 제한되면 한정문구를 표시함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을 구분하여 표시함	재활용성 등급, 재생원료 함량 및 분리배출 표시를 단계적으로 적용함
생산자책임· 보고	RA 11898 적용기업은 플라스틱 포장재 회수·관리 의무를 부담함	주별로 생산자책임조직 가입, 포장재 자료 제출 및 비용 부담이 요구될 수 있음	용기·포장 사용량에 따른 재상품화 의무 및 비용 부담이 적용됨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포장재 출시량 보고 및 비용 부담이 요구됨
금지·제한 요건	재활용 불가 포장 판매금지보다 재활용 불가 표시가 중심임	허위·과장 재활용 가능 표시가 금지됨	미표시 또는 재상품화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 과대포장 및 일부 일회용 포장을 단계적으로 제한함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An Act Creating the Philippine Recycling Label, Providing Its Specifications and Coverage, Prescribing Penaltie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House Bill No. 9281, 2026
관리기관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법적근거	2000년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 9003, 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2000),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법(Republic Act No. 11898,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ct of 2022)
통보문서	미통보
주요목적	소비재 포장의 재활용 정보 표준화 및 자원순환 촉진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적용대상 포장 관리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규제가 적용되므로, 기업은 식품·음료·생활용품·개인관리용품·전자제품 등 자사 제품 포장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 의무에 대응해야 함
재활용 라벨 표시	적용대상 포장에는 표준화된 PRL을 부착하고, 포장재의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적정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 필수 정보를 영어로 표시해야 함
재활용성 판단 및 정보관리	포장의 재활용 가능 여부는 필리핀 내 실제 수거·선별·재처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국 재활용 가능, 특정 시설 재활용 가능 또는 재활용 불가로 구분해야 함
라벨 규격·배치 기준 준수	라벨은 포장 총 표면적의 2 % 이상 크기로 고대비·식별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며 장식·봉인·기타 표시에 가려지지 않도록 포장 디자인을 관리해야 함
포장형태별 표시 방식 준수	일반 포장은 직접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고, 연포장은 인쇄·슬리브·밴드·고접착성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포장 특성에 적합하고 유통 중 훼손·탈락되지 않는 표시방식을 적용해야 함

○ 평가 항목별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동 법률안은 소비재 포장에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필리핀의 고형폐기물 관리와 생산자책임제도 이행을 지원한다는 환경보호 목적은 정당하며, 소비자에게 일관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인정됨
비차별성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제품과 수입 제품의 소비재 포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국가·기업 또는 수입제품만을 별도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최소무역 제한성	제품의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거나 별도의 인증·시험·허가를 요구하는 조치가 아니라 포장에 표준 재활용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규제 목적에 비해 직접적인 무역 제한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투명성	적용대상, 필수 표시정보, 라벨 크기·배치기준, 시행기관 및 시행규칙 제정기한을 법안에 제시하고 있어 기본적인 규제 방향은 공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라벨 도안, 재활용성 판단기준, 검증절차, 책임주체, 벌칙, 예외 및 유예기간은 명확하지 않음

○ 경제성 분석

- 동 법령안은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로, 기업 부담은 주로 포장 표시 변경과 관련 정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별도의 인증·등록 수수료나 사전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라벨 도안, 재활용 가능성 판단기준, 증빙자료 및 제재 기준이 정해질 경우 추가적인 시험·검증 또는 문서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직접 비용)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을 제품별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영어로 표시하기 위한 포장 디자인 변경, 인쇄판 수정 및 스티커 제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기존 포장에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추가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라벨 면적·가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장 구조 또는 인쇄판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 (간접 비용)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재질 및 재생원료 함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력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여러 품목 또는 다양한 재질의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품별 표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규제 대응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구분	애로유형 및 파급효과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	포장 디자인 및 라벨 수정 부담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을 포함한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가 요구됨	기존 포장 표시 검토 → 필리핀용 표시사항 반영 → 포장 디자인 수정 또는 스티커 부착 비용 발생 가능
포장재 정보 관리	포장재별 표시 정보 확인 및 관리 부담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 등을 제품별로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함	제품별 포장재 정보 확인 → 공급업체 자료 확보 및 표시정보 관리 → 품목별 관리업무 증가 가능
시행기준 및 제재 기준 미확정	적용기준과 위반 위험 판단 부담	법률은 게재 후 15일 뒤 시행되나, 라벨 도안·재활용 가능성 판단기준·검증절차 등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제명에는 벌칙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위반행위, 벌칙 수준 및 책임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행규칙 및 법률안 수정 동향 확인 → 포장 변경시점과 준수 수준 판단 → 세부기준 확정 후 표시 보완 및 거래계약상 책임 조정 가능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 영향) 동 법률안은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소비재의 1차·2차 포장에 포장재 재질, 필리핀 내 재활용 가능 여부, 폐기방법 및 재생원료 함량 등을 포함한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에는 제품별 포장정보 확인, 포장 디자인 수정, 스티커 제작 및 필리핀용 포장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라벨 도안, 재활용 가능성 판단기준, 책임 주체 및 검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법률안 제명에는 벌칙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위반행위와 제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률은 제재 후 15일 뒤 시행되는 반면 시행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이 실제 준수시점과 규제 위반 위험 및 대응 수준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움
- (권고사항) 기업은 필리핀 수출제품의 포장재 재질, 재생원료 함량 및 현지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제품별로 정리하고, 기존 포장에 라벨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행규칙 또는 수정 법률안에서 위반행위, 벌칙 수준, 책임 주체 및 집행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와 표시 오류 발생 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적용시점이 정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수입자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동 법안은 필리핀산과 수입 소비재 포장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명시적인 차별, 중복 적합성평가 또는 외국 인증 불인정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재활용성 판단기준·책임주체·검증절차·벌칙 등이 불명확하며 공포 후 15일 내 시행하도록 하면서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한국 수출자에게 필리핀 전용 포장 변경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위반 가능성이 있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위반 가능성이 있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대응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필리핀 재활용 라벨 표시요건 충족	① 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 원료 함량 우선 확인 ② 기존 포장에 스티커 부착 등 최소한의 방법으로 라벨 표시가 가능한지 검토 ③ 포장 변경 시 수출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초기 대응비용을 감축
중견기업	제품별 표시정보의 체계적 관리	① 필리핀 수출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을 품목별로 정리 ② 공통 적용 가능한 라벨 문구와 표시방식을 마련하여 제품별 포장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③ 시행규칙 확정 후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와 포장재 공급업체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절차 정비
대기업	공급망 및 협력업체 관리	① 협력업체, OEM 생산업체 및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 재질과 재생원료 함량 관련 자료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보 ② 계열사·브랜드별로 공통 활용할 수 있는 필리핀 재활용 라벨 운영기준과 검토절차 마련 ③ 협력업체가 표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 안내, 자료 확인 및 포장 변경 대응을 지원하여 공급망 전반의 표시 오류를 예방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KnowTBT 포털(knowtbt.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KnowTBT 포털(knowtbt.kr)의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 포털(Knowtbt.kr) 접속 → 상담신청)

참고 1

참고자료

- 2000년 생태적 고품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 9003)⁹⁾
-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법(Republic Act No. 11898)¹⁰⁾

9)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1/01/26/republic-act-no-9003/>

10) <https://faolex.fao.org/docs/pdf/phi228024.pdf>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화국

하원

케손시티

제 20 대 의회

제 1 차 정기회

하원 법률안 제 9281 호

하원

전자 제출 접수

날짜 2026. 05. 18.

시간 오전 11:40

접수자 Jonah

법률안·색인 서비스

안둘린 “렌렌” A. 오레타 3 세 하원의원 발의

법률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창설하고, 그 규격 및 적용범위를 정하며, 벌칙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제안 이유서

필리핀은 고형폐기물 관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포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감량, 분리,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 「2000 년 생태학적 고형폐기물 관리법」, 즉 공화국법 제 9003 호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분리와 자원 회수 효율성 측면에서 이행상의 격차가 여전히 명백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 년 생산자책임확대(EPR)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법 제 11898 호는 생산자가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률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적절한 폐기물 분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는 EPR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고 순환경제 관행으로의 국가 전환을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법률안은 소비자 제품 포장에 표준화된 표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 가능성, 재료 구성, 폐기 지침 및 재생원료 함량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되며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5 년 필리핀 재활용 표시법」을 도입한다.

이 법은 정확한 폐기 지침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분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관행을 지역 고형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처리 역량과 일치시켜 자원 회수를 향상하며, 포장재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통해 생산자책임확대 의무의 준수 수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환경 인식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 일본 및 대한민국과 같이 유사한 표시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표준화된 재활용 정보가 재활용률과 소비자 준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필리핀에서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면 폐기물 관리 관행을 조화시키고, 공화국법 제 9003 호 및 공화국법 제 11898 호의

목표를 지원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잔재 폐기물 및 부적정 관리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 이 법률안이 즉시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안토닌 “렌렌” A. 오레타 3 세

말라본시 단독 선거구

필리핀 공화국

하원

케손시티

제 20 대 의회

제 1 차 정기회

하원 법률안 제 9281 호

안틀린 “렌렌” A. 오레타 3 세 하원의원 발의

법률

**필리핀 재활용 라벨을 창설하고, 그 규격 및 적용범위를 정하며, 벌칙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필리핀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 모여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약칭. - 이 법은 「2026 년 필리핀 재활용 표시법」으로 한다.

제 2 조. 정책 선언. - 국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자원 관리에 대한 약속에 따라 다음의 정책을 선언한다:

「2000 년 생태학적 고형폐기물 관리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법 제 9003 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폐기물 분리, 감량, 재활용 및 적정 폐기 관행을 촉진함으로써 고형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한다.

「2022 년 생산자책임확대법」, 즉 공화국법 제 11898 호에 부합하도록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및 순환적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며 측정 가능한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플라스틱 중립성을 진전시킨다.

제품 포장에 명확하고 정확하며 접근 가능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국가의 폐기물 감량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교육과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이 법의 목적상 다음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복합/다층 연성포장(MLP)

소비자 포장

산업용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

“포장” - 공화국법 제 11898 호에 부합하게, 상품을 담거나, 보호하거나, 취급하거나, 인도하거나 또는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한다.

소비 후 재생원료 함량(PCR)

“재활용 라벨” - 지역 고형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따라 재료의 종류, 재활용 가능성 및 적절한 폐기 경로를 표시하는 표준화된 표지 또는 인쇄 지침을 말한다.

“재활용 가능성” -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인 재활용업체 또는 그 밖의 승인된 회수 체계에서 해당 재료를 수거하고, 분리하며,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수지 식별 코드

제 4 조. 재활용 라벨 의무. -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소비자 제품 포장에는 이하 필리핀 재활용 라벨(PRL)이라 하는 표준화된 재활용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라벨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재료 유형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종이, 알루미늄 및 유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포장재의재료 구성을 명시한다;

재활용 가능성 표시 - 해당 포장이 필리핀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해당되는 경우 “필리핀에서 재활용 가능” 또는 “필리핀에서 재활용 불가”로 표시한다;

전국적으로 재활용 가능;

특수 시설에서 재활용 가능; 및

필리핀에서 재활용 불가.

폐기 지침 - “재활용품으로 분리” 또는 “잔재 폐기물로 폐기”와 같이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재생원료 함량 표시 - 해당되는경우 포장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비율을 표시한다. 예: “재생 플라스틱 30% 사용”; 및

언어 요건 -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로 인쇄하여야 한다;

제 5 조. 라벨 규격. - 재활용 라벨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포장 총표면적의 2 퍼센트(2%)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표면적 100 제곱센티미터(100 cm²)당 2 제곱센티미터(2 cm²)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라벨은 명암 대비가 뚜렷하게 인쇄되어야 하고 포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장식 요소, 봉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에 의해서도 가려져서는 아니 된다. 연성포장의 경우 PRL은 고접착성 라벨을 사용하여 직접 인쇄하거나, 슬리브를 씌우거나, 밴드를 두르거나 또는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다. 라벨에는 재활용 가능성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제 6 조. 범위 및 적용대상. - 이 법의 규정은 식품, 음료, 가정용품, 개인관리용품 및 전자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의 모든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적용된다.

제 7 조. 예산 배정. - 이 법의 최초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PNAC의 현행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의 계속적인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연례 일반세출법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및 규정. - 통상산업부(DTI)는 환경천연자원부(DENR) 및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NSWMC)와 협의하여 이 법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및 규정을 공포·발령하여야 한다.

제 9 조. 가분 조항. - 이 법의 일부 또는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나머지 부분 또는 그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제 10 조. 폐지 조항. -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법령, 행정명령, 포고 및 행정규정 또는 그 일부는 이에 따라 폐지, 개정 또는 수정된다.

제 11 조. 효력 발생. - 이 법은 관보 또는 일반 유통 신문에 공표된 날부터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됨,